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1가합1013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농업회사법인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354,450,27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주식회사 B농업회사법인은 원고에게 354,450,2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재판장 판사 김세현, 판사 이은혜, 판사 김라미

별지1.

청구원인

1. 원고의 보증과 소외 금융기관의 대출

가. 원고의 보증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소외 주식회사B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C(이하 위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소외 회사가 소외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 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D은행에게 각 발급하였습니다.

나. 연대보증

한편 소외 C은 <표1> 보증건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에게 보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소외 회사는 아래 <표2> 와 같이 D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습니다.

<표1. 보증내역>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E	340,000,000	2013. 7. 12.	2021. 7. 2.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D은행 F금융센터
2	G	637,500,000	2013. 7. 29.	2021. 7. 23.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D은행 F금융센터

<표2. 대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340,000,000	(기운)일반자금 대출 (일시상환)	2013. 7. 12.	400,000,000
2	G	637,500,000	(기운)일반자금 대출 (일시상환)	2013. 7. 29.	750,000,000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그런데 위 소외 회사의 2021. 1. 4.경 부실(원금연체등)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과 같이 D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위변제 합계액을 상

환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표3. 대위변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자	원금	이자	구상합계액
1	E	2021. 3. 25.	340,000,000	3,926,343	343,926,343
2	G	2021. 3. 25.	544,000,000	6,692,497	550,692,497
합계			884,000,000	10,618,840	894,618,840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
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
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아래 <표4> 와 같습니다.

<표4. 지연손해금율 내역>

기 간	이율(연)	비 고
대위변제일부터 - 현재까지	8%	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

3. 대위변제금잔액 및 확정지연손해금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금 2,556,1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 및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표5> 와 같습니다.

<표5.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회수금액	잔 액	확정지연손해금
1	E	343,926,343	2,556,160	341,370,183	560
2	G	550,692,497	-	550,692,497	-
합계		894,618,840	2,556,160	892,062,680	560

4. 법적절차비용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 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위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중 미회수된 잔액은 현재 금 627,740원입니다.

5. 구상채권 합계

그러므로 위 소외 회사, 소외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892,062,680원(금 341,370,183원 + 금 550,692,497원)과 위 확정지연손해금 560원, 위 법적절

차비용 627,740원등 합계금 892,690,980원(위 대위변제금 892,062,680원 + 위 확정지연손해금 560원 + 위 법적절차비용 627,740원)과 위 대위변제금 892,062,680원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

6. 위 소외 회사과 피고간의 사해행위

(위 소외 회사과 피고간 체결한 매매계약 체결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 사고로 인하여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더니, 위 소외 회사 대표이사 C은 신용보증사고 직전인 2020. 10. 23.경 자신 회사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 649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나.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는 위 소외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위 소외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등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역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매매계약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위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재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재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 41490호,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 66416 판결등 참조)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H주식회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9. 8. 23. 접수 제 47457호 채권최고액 888,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B농업회사법인, 근저당권자 H주식회사)에 대한 각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피고가 사해행위 이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1,100,000,000원에서 위 H주식회사의 실대출금 745,549,729원을 공제한 잔액인 금 354,450,271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의 범위,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원고소송대리인은 추후 근저당권자 H주식회사의 피담보채무 잔액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한 후 가액배상금액을 확정하겠습니다.)

마. 따라서 피고와 위 소의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금 354,450,271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금 354,450,2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7.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별지2.

목 록

1. 부산 강서구 I
대 649㎡
2. 부산 강서구 I
[도로명 주소]
부산 강서구 J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307.25㎡, 끝.